

효성티앤씨(주)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1. 목적

이 규정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협력업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3.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3.1 “협력업체”라 함은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3.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4.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웹사이트 또는 각 사업장에서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4.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4.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효성티앤씨(주)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5.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6.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6.1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수립 시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8.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효성티앤씨(주)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9.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0.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10.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위반사항의 처리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효성티앤씨(주)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상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